

화순 동복댐 홍수위까지 2.5m... 인근 주민 '초비상'

댐 하류 지역 동복·사평면
10개 마을 주민 600여명 '긴장'
동복초등학교에 대피소 마련
주암댐 저수율 73%로 상승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로 화순 동복댐이 홍수 위기에 처했다. <관련기사 2·6·7면>

18일 오후 동복댐 홍수시 영향을 받는 10개 마을 600여명의 주민들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화순군은 마을회관과 동복초등학교에 임시 대피소를 마련했다.

동복댐은 지난해 유례 없는 가뭄으로 저수율이 10%대까지 급락하는 바람에 광주지역 제한급수까지 예상했다. 하지만 장마가 시작되면서 지난 7일 홍수대비 방류 수위인 86%에 도달한 이후, 15일 저수율 100%에 이어 16일 자정 기준 만수위까지 넘으면서 동복댐 홍수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동복댐은 하류지역 피해를 막기 위해 홍수기 최고 수위를 86%로 관리하고 있으며, 저수율이 93%를 넘기면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넘치는 월류가 발생하게 된다.

18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동복댐 수위는 168.58m로 만수위(168.2m)를 약간 넘어섰다.

홍수위(171m)까지는 불과 2m 정도 남은 상황으로 저수위는 현재 시간당 3~5cm씩 높아지고 있다. 최대한 수문을 여는 등 월류와 방류를 통해 시간당 78만톤을 내보내고 있지만 유입되는 양이 비슷하거나 더 많은 상황이다.

만일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3~4시간 가량 내리거나 극한호우가 내릴 경우 수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 광주시와 화순군은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는 없지만 저수율이 홍수위인 171m에 도달할 경우 넘치는 물이 댐 하류 지역을 덮치는 홍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화순군 동복면과 사평면의 10개 마을이 영향권에 있다. 화순군은 구북구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5시 동복면사무소에 비상대책회의실을 마련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화순군은 마을 대표 등을 통해 홍수 영향권 마을 주민 전원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등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암댐 저수율은 같은 시각을 기준으로 73%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화순군은 이날 오후부터 비상대기에 돌입, 홍수위 도달 전에 하류 주민들을 대피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구축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동복댐 방류 광주와 전남지방에 많은 비가 내린 18일 광주 식수원인 동복댐에서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군공항 이전특별법 시행령 '독소조항' 땅값 상승 목적 상업적 개발 '대못' 뽑았다

변경 조항 27일까지 입법 예고
강제조항은 여전히 남아 아쉬움

광주시에 국방부와의 물밑 교섭 끝에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중 '독소조항'으로 꼽혀 온 땅값 상승 목적의 상업적 개발을 유도하는 '대못' 조항을 뽑아내는 데 성공했다.

다만 여전히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조항으로 '중전 부지(현 광주 군 공항 부지) 가치(땅값)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남아 있는 점은 아쉬운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선 해당 조항 때문에 향후 부지개발 과정에서 '시민 중심의 공익개발을 하려는' 광주시와 '국가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려는' 국방부 간 '예산 마찰'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중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재입법예고 했다. 지난 5월 입법 예고 기간에 접수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일부 수정하고, 오는 27일까지 다시 입법 예고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지적 받아온 기존 3조 2항 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 조항이 일부 바뀐 것이다.

기존 조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전 부지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고 초과 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면 개발계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는 자치단체에 '돈 안되는' 공익 등 공익적 공공시설보다는 대규모 아파트 조성 등 '돈 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해 기존 부지(현 광주 군 공항 부지)의 가치(땅값 등)를 최대한 끌어 올리라는 것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할 초과사업비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돼 광주시의 반발을 샀다.

국방부도 이 같은 광주시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이번 재제고안에서는 기존 안의 3~5조를 통합하고, 4조에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을 담았다.

제고안 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과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며 중전 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 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4조에 따라 중전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

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존안 중에서 중전부지 가치 향상을 위해 아파트 등 개발을 조정할 수 있다는 광주시의 주장에 따라 '개발계획 등 변경'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광주시에 추가로 요구한 부정하거나 잘못 지급된 초과 사업비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한 조항 삭제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단 광주시는 "중전부지 개발 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삭제된 만큼 다른 의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선 해당 시행령 조항의 상위법인 군 공항 지원 및 지원관 특별법 제24조(중전 부지 가치향상 의무)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조항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그 하위 시행령에서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문구 역시 결국 아파트 등 상업적 개발을 강요하는 독소조항이라는 의견 등을 제기하고 있다.

광주시와 자치구 등에서 법률 자문을 맡아온 한 변호사도 "의무조항이라는 점에서 향후 부지개발이 공익개발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며 "강구해야 한다"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바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어렵다면 (광주시는) 공익개발을 할 수 있는 행정적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관계자도 "물론 부지 가치(땅값)를 높이기 위해 상업적 개발이 불가피한 점이 있지만, 국가사업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방법으로 부지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재입법예고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안을 미흡하다고 판단,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전남도는 18일 "최초 입법예고된 국방부 안이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에 따라 자체 시행령안을 마련해 건의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국방부를 직접 찾아가 지역민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대한민국 해상풍력 5대 강국 도약

전남형 상생 일자리 8.2GW 해상풍력으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과 '발전수의 공유'

주민 이익 공유형 · 수산업 공존 발전단지 조성

글로벌 수준의 '산업 생태계' 조성

해상풍력 기자재 및 연관기업 450개사 유치 · 육성

'12만개 지역일자리' 창출

최첨단(AI, ICT 등) 전문직군 및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그린수소 전주기 메가 클러스터' 구축

해상풍력 연계,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